음악저작물 이용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저작물 이용]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작사자 · 작곡자 · 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 · 작곡자 · 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올바르게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이용 1
1. 음악저작물 개요 4
1.1.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4
1.1.1.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4
1.1.2.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7
2. 음악저작물 이용 14
2.1.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14
2.1.1.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14
2.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17
2.2.1.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7
2.2.2.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1
2.2.3.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25
2.3.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27
2.3.1.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27
2.3.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28
2.3.3.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9
3. 음악저작권 분쟁 34
3.1. 음악저작권의 침해 34
3.1.1.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34
3.1.2.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39
3.2. 저작권 침해 구제 42
3.2.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42
3.2.2.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44
3.2.3.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48
3.2.4.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52

1. 음악저작물 개요

1.1.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1.1.1.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음악저작물의 개념

▪ 음악저작물이란?

▹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즉흥연주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다만,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가 표현되는 “악보”의 경우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닙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 저작권

▹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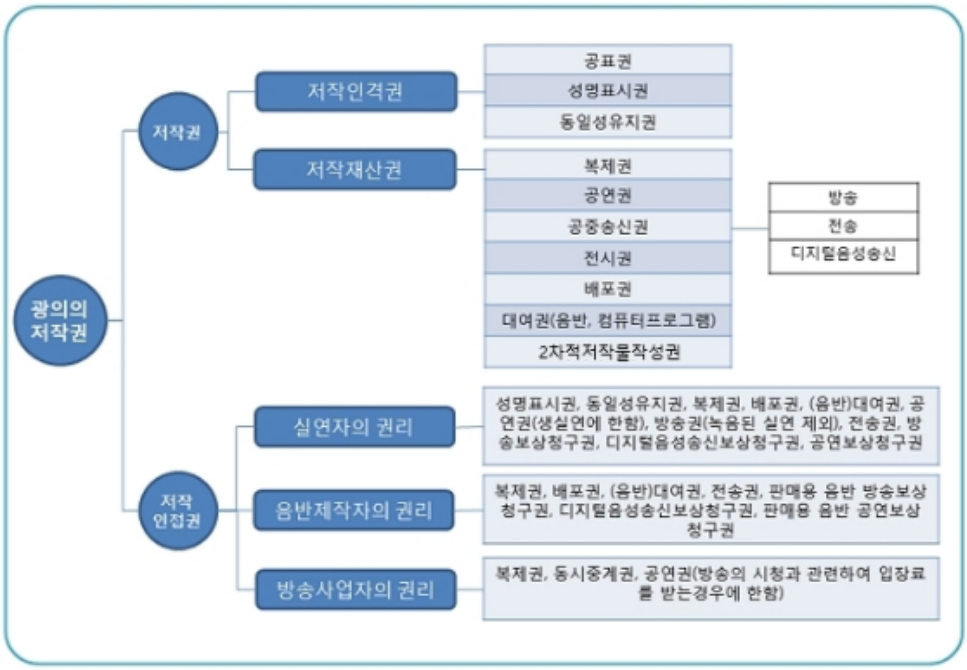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

▹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되는 권리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주요정책-정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 저작인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의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무방식주의).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그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출처: 『저작권bag』,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44쪽)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의 음악저작물

▪ 저작물의 유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9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화음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에서 노래 ‘칵테일 사랑’은 주 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 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해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결정).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 이란?

▪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9쪽).

1.1.2.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저작자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단체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20쪽).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권리의 유형	세부 항목	권리자
저작인격권	공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재산권 양수 및 승계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가 있습니다.

√ "작사자"란 가요의 가사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작곡자"란 화음, 리듬, 멜로디, 음악이론 등을 기초로 하여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악보로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코드 29452).

√ "편곡자"란 작사자·작곡자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저작자의 추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면 보다 쉽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등록

▪ 저작물의 등록은 저작자의 신청이나 촉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32쪽 참조).

▹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게 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 받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 "추정"이란? 일정한 법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의한 효과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저작권자)는 침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6항 참조).

▹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등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4조 참조).

> ※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리는 저작권자가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 및 신탁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의 <저작권보호 개관-저작권 위탁관리>를 참고하세요.

음악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 a가 자신의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간에 일어난 양도 효력은 있지만 a가 c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해 버리면 b는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c에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제한"이란 양도나 증여 등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참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

Q.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은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권리 이전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저작재산권 양도의 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제3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종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중양수를 받았거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등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종전의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단이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재산권 양수인도 그러한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무단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에게 그 등록이 안 된 사실을 주장할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가진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양도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임을 그 제3자에 대해 주장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Q.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음반을 발매한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자신들은 lp음반 발매계약을 맺었을 뿐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음에도 별도의 협의 없이 cd음반이 발매된 경우 음반 제작사는 해당 계약은 이용허락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 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따라서 저작권 이용계약에 있어 양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양도계약이라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용허락범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그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추정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

▹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제작

Q.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다른 사람이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를 토대로 유사한 다른 가요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표명한 이용목적 등 계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인 특약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추정이 번복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토대로 유사한 작품을 작성한 것이 저작자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셈이므로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작성한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을 작성하면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내용 내지 표현형식 등을 개변한 셈이 되므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작자의 성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두 작품 사이에 그러한 의미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78쪽)

음악저작물을 편곡·변형 및 각색하면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로서의 편곡

▪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 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조제2항).

코러스 편곡의 저작물성

Q.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법」 제5조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함)은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2차저작권의 일종인 편곡저작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칵테일 사랑”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에서 코러스 부분이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칵테일 사랑”에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신청인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2차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59쪽)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

▪ 법원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선고 99도863).

편곡 및 개사를 통한 선거 홍보용 노래의 제작

Q. 선거에서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선거 홍보용 음악을 사용할 때 개작을 하게 될 경우, 저작인격권을 먼저 처리해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①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 개작동의서 다운로드 → ②작품 검색을 통해 협회 관리곡인지 확인 → ③저작자 확인 후 연락처 문의 (협회 직원에게 유선으로 가능함) → ④저작자가 서명한 서면상 개작동의서 받기(본인이 직접 저작자와 직접연락) → ⑤선거로고송 사용신청서/개작동의서 협회로 제출) → ⑥협회 지정 계좌로 저작권료 입금 → ⑦승인 절차 후 , 계산서와 사용승인서 우편으로 수령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개작동의서를 받을 때 저작자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복제권은 정해진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면 됩니다.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통령 선거	대통령	2,000,000원
정당용	국회의원등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	광역시장, 도지사	1,000,000원
기초단체장 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500,000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500,000원
광역의원	광역시·도의원	250,000원
기초의원	시·군·구의원	125,000원
교육감 선거	시·도 교육감	500,000원
교육의원 선거	시·도 교육의원	250,000원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2. 음악저작물 이용

2.1.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2.1.1.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복제권)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음악저작물의 배포권

-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0조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 음악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공연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Q.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음악저작물의 공연·방송에 의한 전달

공연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방송

▪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Q. MP3 파일을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나요?

A. 사전적 의미로 "녹음물(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이란 테이프나 LP판 등에 소리를 기록한 유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녹음물을 재생한다는 것은 CD 등의 음반을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MP3나 컴퓨터로 저장된 파일을 재생시키는 것도 녹음물의 재생에 포함됩니다.

사람의 실연이나 실연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장소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에 전달하는 형태의 이용행위에 대해 베른협약을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은 공연 또는 공중전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연의 정의에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신조항은 실연이나 실연의 복제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공연이 행해지는 근접장소에 전달하는 것을 공연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81쪽)

음악저작물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Q.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음만 송신한 경우라면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함).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귀하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

<table>
<tr><th>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여부</th><th colspan="2">이용 방법</th></tr>
<tr><td rowspan="4">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td><td rowspan="3">저작권자를 찾은 경우</td><td>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음</td></tr>
<tr><td>저작권 위탁기관을 통한 이용허락</td></tr>
<tr><td>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td></tr>
<tr><td>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td><td>법정허락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td></tr>
<tr><td rowspan="2">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td><td colspan="2">저작권 보호기간(70년)이 지난 음악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td></tr>
<tr><td colspan="2">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사적복제, 비영리공연, 공정이용 등)</td></tr>
</table>

※ 음악저작물 이용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및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2.2.1.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 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안 됨(「저작권법」 제106조의2)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5호).

※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한 정보검색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dcopyright.or.kr)의 <저작권위탁관리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컨대 귀하께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이용계약 관련 사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용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계약)의 일반해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 대법원은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

▹ "음반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6호).

제3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의 그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음반에 고정시켜 편집음반을 만든 경우

▪ 원반을 제작했던 음반제작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처음 저작자들과 음반제작자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 **※ 계약해석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한 판례**
>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
> **※ 계약해석 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판례**
>
> 음반제작자가 원반(原盤)의 기획,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반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음반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당시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편집음반에 원반에 수록된 곡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원반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란?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리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절차

▪ 저작권비즈니스센터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용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합니다.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합니다.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됩니다.

2.2.2.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저작권법」 제50조제5항)
>
>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상당한 노력의 기준

▹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8. 공고자 및 연락처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비즈니스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 법정허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요업무 — 법정허락>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제68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법정허락의 승인연월일 등 표시 의무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2항).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보상금 금액
- 보상금 지급 근거
-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보상금 청구 절차

▪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함)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입증 자료
  -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보상금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6항)

√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 저작권 보호 사업

√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8조제2항).

√ 보상금 지급일

√ 승인신청 금액

√ 보상금 사용 목적

√ 보상금 사용 계획

√ 승인신청 일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8조제3항).

2.2.3.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사람이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승인 절차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과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 승인 여부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 "기각(棄却)"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참고).

  √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승인 여부 통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사람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사람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

- 보상금을 공탁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3항).

2.3.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2.3.1.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기증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증 방법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저작권 기증절차-저작물 기증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기획재정부, 107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인격권의 소멸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입니다.

▹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4쪽).

▹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보호기간

▪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3.3.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함)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과 보상금**
>
> **Q.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활성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보호나 저작권 침해의 단속·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 지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과서 등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은 별도로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부담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6항).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기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학교교육과 같이 광범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국제조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등에 위배될 소지 및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Q.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 외에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제도>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비영리 목적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학교 축제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

Q. 학교 축제에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출연자에게 소정의 출연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공연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민사상으로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적어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형사적으로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저작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상업용 음반의 재생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 "판매용 음반"이란 공중에 판매를 위해 제작된 음반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매용 음반이나 데모용 음반 또는 국제적 지사를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세계각국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참고).

▪ 다만, 일부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는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 보호> 의 <저작물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도장 입장료는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Q.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음악에 대한 대가인가요?
A. 법원은 무도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 춤을 추게 하고 입장료를 1000원씩 받은 것은 무도 공간의 사용 대가일 뿐만 아니라 무도곡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1998. 12. 7. 선고 88가소16095).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란?

▹ 「저작권법」 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는 이유

▹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상의 열거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2쪽).

▪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해당여부 판단 기준

▹ 공정이용의 해당여부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익적인 취지의 UCC 제작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Q.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동시에 수신할 것을 목적으로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전송이나 방송의 개념에는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지만, '공중송신' 행위에는 포함됩니다.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81쪽)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관련 판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 보호> 의 <저작물이용하기-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음악저작권 분쟁

3.1. 음악저작권의 침해

3.1.1.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음악저작권의 침해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청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4쪽 참고).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블로그의 이용

▪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

비영리 공연의 경우

▪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음악저작물의 링크와 전송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의 경우

▪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 따라서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Q.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 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제공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저작권법」 상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제3자가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웹하드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Q.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저작물을 본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포털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나요?

A. 파일공유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올리는(Upload)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이하 '사적복제'라 함)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정 내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제1항제4호). 그러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공유 및 복제하거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공유 폴더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공중이 그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1쪽)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소리바다'사건)

법원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임을 예측하면서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했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서버에 보관해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사적복제에 의한 저작권 제한 적용

Q.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참고).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99쪽)

※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년의 인터넷이용하기>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저작권 침해하지 않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

▪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단지 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메일 발송행위가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반복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음악과 저작권』,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공중송신의 개념 속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제11호 참조).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 만들기

UCC 배경음악의 사용

▪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배경음악과 저작권 침해

Q.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인가요?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또는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 되나요?

A. UCC를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광고방송에의 이용

▪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광고방송의 음악저작물 이용

Q. 광고제작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5초 내지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고시간과 화면 등에 의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5쪽)

리메이크의 경우

▪ “리메이크”란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판결 2009가합66124 참고).

▪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 복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및 제16조 참고).

리메이크의 저작권 침해

Q. 마음에 드는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하여도 원작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리메이크 곡을 사용하면 표절이 되나요?

A. 기존 음악의 제목과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곡의 리듬이나 음정, 박자 등을 바꾸어서 새로운 느낌의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곡을 이용하는 표절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가요를 한글가사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리메이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이용해야 하고 또 원곡을 변형하게 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리메이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작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작품을 이용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57쪽)

음악저작물의 표절

▪ “표절”이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3.1.2.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음악저작권의 침해

"음악저작권의 침해, 표절 또는 패러디"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패러디(Parody)”란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유형

▪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는 ① 저작재산권 침해, ② 저작인격권 침해, ③ 출판권 침해, ④ 저작인접권 침해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1.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4.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표절 판단기준

▪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표절의 판단기준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ëŒ€2015. 8. 13. ì„ ê²2013ë14828 íŒ•ë°°ì¸)°

패러디의 판단기준

▪ 패러디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가 없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책임을 면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의하면, 먼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평 또는 풍자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회현실인 패러디(매개패러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할 수 없고 비평 또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 자체인 경우(직접적 패러디)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 또한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차용하는 경우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적어도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토씨 하나 바꾸지 아니한 복제일 경우에는 아무리 패러디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음악저작물의 패러디 허용 범위

Q.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 자작가사를 붙여서 패러디 한 것도 표절인가요?
A.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패러디는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원작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적 모방을 한다는 점에서 원작을 몰래 모방하는 표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패러디가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작품의 비평, 풍자를 위한 모방은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패러디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적법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① 비평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②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③ 공정한 관행에 따라 원작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도 “컴백홈” 사건에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84쪽)

3.2. 저작권 침해 구제

3.2.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와 손해액의 산정

- 손해액 추정

  -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최소배상금의 보장

  -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 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 과실의 추정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6항).

▪ 손해액의 인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의2)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 저작재산권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저작권법」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등

명예회복 등의 청구

▪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침해의 정지 청구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합니다.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 등 청구

▪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가압류 및 가처분

▪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 위의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3.2.2.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과 위반행위의 미수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 제104조의6(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 금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저작권법」 제137조제2항 및 「형법」 제29조).

- 위를 제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3항).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저작권의 권리등록·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을 거짓으로 한 사람
  -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저작권법」 제103조의3제4항)한 사람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
  - 「저작권법」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저작권법」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 「저작권법」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1.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4.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80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4조제2항)
-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04조의4제3호)를 한 자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3항)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저작권 등록 등의 업무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 위반시 벌칙

▪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몰수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고소

친고죄

▪ 위에서 정한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비친고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저작권법」 제124조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함)

▸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2호)

▸ 「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양벌규정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8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Q.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침해자에게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할 경우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저작권백서(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8쪽)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Q.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의 우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A.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3.2.3.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은 수거·폐기, 삭제 등 조치됩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함)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무력화기기"라 함)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절차와 방법

▪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5조).

▪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을 내주고, 수거·폐기·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 수거한 불법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이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3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한국저작권보호원
-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출입·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1., 2.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음)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함)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2항).

- 복제·전송자의 계정
-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함)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3항).

정지 명령 횟수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기간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긴급차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요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40호서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2항 단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범위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2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1.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위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 위의 1. 2.의 조치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04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기술적 조치

Q. P2P, 웹하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등도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불법전송 차단 조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A.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서비스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04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웹하드는 개인에게 일정한 가상의 저장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서비스이므로 웹하드 서비스업자 모두를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개인 간에 불법적으로 저작물 공유를 "주된"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66쪽)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Q.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저작권법」 제103조제2항)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저작권법」 제104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 명령제도(「저작권법」 제133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①경고, ②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③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④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출처: 『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96쪽)

3.2.4.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 및 조정

분쟁알선

▪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사업-조정·알선-알선 참고].

▪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분쟁조정(이하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사업-조정·알선-조정 및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adr.copyright.or.kr)-제도안내-조정의 개념 및 효력)

▪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현재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11개의 단독조정 등 총 19개의 조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 직권조정결정(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조정·알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